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2623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탈퇴) 주식회사 A

원고 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금 17,867,3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금 17,867,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은 E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1) E는 2016. 1. 21. F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변제해 왔는데, 그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F 주식회사는 2017년경 수원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7차전40)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7. 1. 6. ‘채무자 E는 채권자 F 주식회사에게 8,442,312원 및 그 중 8,074,607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 4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7. 6. 9. 확정되었다.

2) 위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은 원고를 거쳐 이 사건 소가 제기(2020. 6. 16.)된 이후인 2021. 1. 20.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를 양수하였다.

나. G(1939년생, 이하 ‘망인’)는 피고(1943년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H, I, D, E 네 남매를 두었는데, 2016. 9. 2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1988. 11. 14.에, 2005.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는데, 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10. 19.에, 2016. 9.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그 뒤 피고는 2018. 7. 5. J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원에 매도하였고, 2018. 7. 31. J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 기준시가는 9,700만원, 2017년 기준시가는 1억 900만원이다.

3) 망인과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게 계속 거주해 왔고,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을1, 2, 4, 5, 7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내용(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E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11을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한 것은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E에 대한 채권액(2020. 6. 16.자 기준금액 17,867,38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직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E의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즉 피고가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E의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는지가 쟁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2)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3) 앞에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앞에서 본 기초사실 이외에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E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점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망인과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매도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처럼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E 이외에 망인과 피고 사이의 자녀들 3명도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② 망인의 사망 및 이에 대한 E의 인식 시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가 E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E가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E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던 위 사정은 피고가 E의 재산 상태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③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자녀들은 상속을 사실상 포기하고 생존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그 경우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넷이다)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경위를 참작해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이균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울산광역시 남구 K

대 140㎡

2.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남구 K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L

건물의 내역 : 벽돌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주택

1층 81.06㎡

2층 69.89㎡

부속건물) 벽돌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변소 및 창고 2.0㎡

- 이 상 -

